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2. 1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 오옥자 의원 외 13인
- 나. 회부일자: 2023. 2. 6.
- 다. 상정일자: 제260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3. 2. 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오옥자 의원

가. 제안이유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2) 접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안 제3조)
- 3) 예방접종 위탁 및 지원 절차 (안 제4조, 안 제5조)
- 4) 환수조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준용 (안 제6조~안 제8조)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제정 배경

-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사정
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부담이 가중되어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목적과 지원대상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 목적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예방접종 지원을 1회로 한정하는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절차 및 위탁접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안 제7조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환수규정과 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환수 및 보상 규정에 대해 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대상포진은 대상포진바이러스에 감염 후 후근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상포진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포진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전파되어 수두를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임.
- 대상포진의 합병증은 신경통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 질병
관리청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0세 이상 성인에게 1회 접종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서울시민이 2021년 동안 이용한 적이 있는 지역사회 시설은 의료기관(그 외 민간 병·의원)이 93.4%로 가장 높았음. 이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¹⁾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의료 복지 정책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표 1. 마포구 65세 노인인구 현황 (2022.1.31.기준)]

| 구분 | 노인 인구수 | | | 마포구 인구수 | |
|----|---------|--------|--------|---------|--------|
| | 계 | 남 | 여 | 인구수 | 노인인구비율 |
| 계 | 545,446 | 22,952 | 31,494 | 368,617 | 14.77% |

[표 2. 마포구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10월 |
|------|-------|-------|-------|----------|
| 접종인원 | 1,127 | 1,031 | 608 | 590 |

- 그러나, 대상포진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²⁾ 단서에 따라 법률로서 경비 지원이 가능하고 조례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법률의 구조적 정합을 이루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본 조례안에서 마포구 거주 1년 이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1)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인 사회(통계청 예상 기준 2026년)

2)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례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판단되므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의료복지 확대 차원의 정책으로 검토되어 긍정적으로 사료됨.

[표 3. 서울시 자치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현황]

| 구분 | 자치구 | 대상 | 규모 | 접종방법 | 거주기간 |
|----|------|------------------|-----|------|--------|
| 1 | 용산구 | 65세 이상 수급자 | 전액 | 위탁 | - |
| 2 | 성동구 | 65세 이상 구습자 및 차상위 | 전액 | 위탁 | 1년 이상 |
| 3 | 광진구 | 65세 이상 수급자 | 전액 | 자체 | 1년 이상 |
| 4 | 서대문구 | 65세 이상 수급자 | 전액 | 자체 | 6개월 이상 |
| 5 | 금천구 | 65세 이상 수급자 | 전액 | 자체 | 1년 이상 |
| 6 | 강동구 | 60세 이상 수급자 | 전액 | 위탁 | 1년 이상 |
| 7 | 동대문구 | 65세 이상 구습자 및 차상위 | 50% | 자체 | 1년 이상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疫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疫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疫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疫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疫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疫료
6. 그 밖에 「보건疫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疫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疫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疫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疫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疫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疫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疫료기관 또는 공공보건疫료수행기관의 보건疫료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